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6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입법 취지	2
2. 주요 내용 및 조문 체계	4
3. 총괄적 검토	6
가. 함정 감항인증 시행의 전제조건 구비 여부	6
나.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함정의 범위	8
다. 현행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제도와의 중복·상충시 적용 방안 ...	10
라. 함정 전문기관 지정 관련	11
마. 재정소요	17
4. 조문별 검토	18
가. 목적, 용어 정의, 경찰용 선박에 대한 준용(안 제1조~제3조)	18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감항인증 절차 및 적용 제외 등(안 제4조~제7조) …	21
다. 감항성 유지·기술지원 및 수수료(안 제8조, 안 제9조) ……………	27
라.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안 제10조, 제11조) …	28
마. 기술자료 지원·유지, 예산 지원 업무 지원 요청(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	30
바.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안 제13조, 제14조) ……………	32
사.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7조) ……………	35
아. 부칙 ……………	36
 ※ 참고자료 ……………	 39
1. 해군 함정 종류 및 분류 ……………	39
2.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	4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 현재 민간 선박, 민간 항공기 및 군용항공기는 해당 법률에서 감항인증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함정의 경우 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선박·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법률]

구분	관련 법률	대상
민간선박	「선박안전법」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한 선박 (군함, 경찰용선박, 인력선, 어선 제외)
민간항공기	「항공안전법」	민간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군용, 경찰용, 세관용 제외)
군용항공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 (일회성 발사체 제외)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함정의 제조 및 운용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사고로 인한 함정 침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감항

1) 감항인증이란, 비행기 또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비행 및 항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감항성을 가지고, 운용범위 내에서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의미함.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감항성(堪航性)”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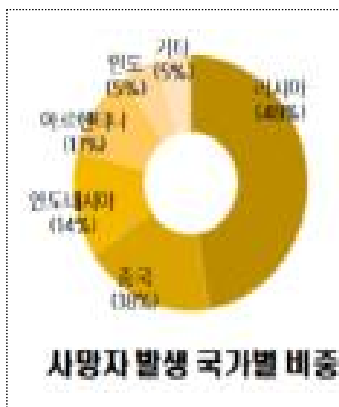
인증 제도 미운용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함정은 체계의 복잡성과 바다라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상 복구가 힘들며 함정에 타고 있던 장병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연도별 세계 잠수함 침몰사고 통계]

구분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운용척수	578	692	835	883	934	842	531	536	549
잠수함 침몰척수	4	11	7	6	3	3	1	2	1
잠수함 사고 발생률 ²⁾	7.1	7.6	4.9	3.9	2.2	2.1	1.2	1.3	3.4

[2000년대 잠수함 사고 통계: 총 38회(연 평균 약 1.7회)]



* 주요 사고사례

국가	함명	시기	사고원인	결과
러시아	Kursk	2000	함내 어뢰폭발	전원사망(118명)
중국	SS 361	2003	산소부족	전원사망(70명)
아르헨티나	San Juan	2017	추전지실 폭발	전원사망(44명)
인도네시아	Naggala	2021	원인미상	전원사망(53명)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2) 잠수함의 작전운항 1,000만 시간당 사고발생 건수

□ 이에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국외 선진국의 경우 합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항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내 합정 안전 수준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합정 수입국에서 합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합정이 감항인증 제도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및 조문 체계

□ 제정안은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감항성’, ‘감항인증’과 같이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는 경찰용 선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 절차, 적용 범위, 기술지원 및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자문위원, 전문기관 지정, 주관기관 지정 등 감항인증에 필요한 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제16조는 업무 지원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는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임.

이 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조문 체계를 가짐.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합정의 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
제2조(정의)	“합정”, “감항성”, “감항인증” 등에 관한 정의
제3조(경찰용 선박의 감항인증)	경찰용 선박에 대한 준용 규정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합정 사업 추진 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술기준 고시
제5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합형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단계별 감항성 심사 수행, 감항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 요건
제6조(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연구 목적의 합정에 관한 감항인증 신청
제7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수출용 합정에 대해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않을 시 적용 제외 등
제8조(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	합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 가능
제9조(수수료)	감항인증 신청자에게 수수료 부과 가능
제10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감항성 심사 결과 확인 등 감항인증 심사 및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 수행
제11조(감항인증 자문위원)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 자문 수행
제12조(감항인증 기술자료의 지원·유지)	합정의 운항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술자료 관리·유지 의무
제13조(합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제14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합정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조문	주요 내용
제15조(예산의 지원)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16조(업무 지원 요청)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제17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감항인증 관련 기관 등에 권한의 재위탁 가능
부칙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및 감항인증에 관한 준비행위(제3조)에 대한 규정

3. 총괄적 검토

가. 함정 감항인증 시행의 전제조건 구비 여부

□ 감항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안 시행 이전에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제정안의 토대가 된 「함정 감항인증 기준 및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보고서³⁾ 결과에 기초하여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3) 2021년 12월 29일에 제출되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였음.

즉, 방위사업청은 국제함정안전협회⁴⁾(INSA; International Naval Safety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기준인 ‘잠수함 감항인증기준’(Naval Submarine Code)과 ‘수상함 감항인증기준’(Naval Ship Code)을 참고하여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임.

참고로 제정안의 감항인증 제도와는 별개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85조⁵⁾에 따라 ‘잠수함’ 감항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2025년 1월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방위사업청예규)을 제정하여 ‘잠수함 감항성 관리 매뉴얼’ 및 ‘잠수함 감항성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NATO 기준 가운데 수상함에 대한 감항인증기준인 Naval Ship Code는 공개되어 있으나, 잠수함에 대한 감항인증 기준인 Naval Submarine Code는 INSA 회원국⁶⁾에만 공개하고 있음.

우리나라 해군은 INSA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ATO 기준을 바탕으로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INSA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INSA 가입에 걸리는 기간 및 가입 이후 NATO 기준을 획득하여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하는데

4) 영국, 독일 등 13개국 해군 및 로이드, DNV-GL 등 7개의 선급이 회원국으로 있음.

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5조(함정사업의 원칙) ⑧ 잠수함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를 수행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를 통해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 현재 13개국 해군과 9개 선급이 가입됨.(대한민국 해군은 미가입, 한국선급은 가입).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제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나.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함정의 범위

-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함, 잠수함, 전투근무지원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정’에 대해서만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대통령령으로 ‘잠수함’에 대하여만 이 법을 적용하고, 수상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계획임.

이는 수상함의 경우 1972년부터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운용하며 안전에 대한 기술력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으며, 함정설계건조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법률의 제정 취지가 함정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인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잠수함에 한정해서 감항인증을 실시하기보다는 모든 함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7)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2년 8월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사 이후 함정의 감항인증에 관한 준비가 사실상 중단되어 현재 INSA 가입 준비 및 표준감항인증 기준 등의 마련에 진전이 없는 실정임.

□ 제정안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도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경찰용 선박에는 경찰이 운용하는 선박과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선박이 있음.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해경 함정이 군 함정과는 다른 체계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해경 함정이 이미 「해양경찰 함정 설계·건조 기준」, 「선박안전법」, 국제해사법규 등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 특성에 맞게 설계·건조되고 있고, 함정 건조 시 선박 전문 감리사가 함정 성능에 대한 위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장비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인검사를 받아 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 제정안에 따른 감항인증 기준을 별도로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 효율성 및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임.

경찰청도 경찰청 운용 선박은 4톤 미만의 소형 선박으로 한강 등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및 변사체 인양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사용 목적상 군사용 함정과는 규모와 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동 준용규정에 부동의하는 입장임.

이와 같이 관계 기관 등의 의견과 경찰용 선박은 그 목적과 규율 내용이 군 함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현행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제도와의 중복·상충시 적용 방안

□ 현재 함정 획득 시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준, 설계와의 합치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품질보증 규격서와 감항인증기준의 내용 간 서로 유사·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 업체 부담,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 감항인증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품질보증 업무란 계약조건 및 사용자(소요군)의 요구조건 부합 여부 확인 및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수품 품질보증 및 검사조서 발급을 위한 계약요구조건의 검토,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및 검토, 위험식별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크게 품질경영체제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로 분류할 수 있음. 방위사업청장이 동 업무의 관리를 주관하며,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실무적인 품질보증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제28조(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감항인증 유사 업무 비교]

구분	시험평가	품질인증	감항인증
주관	합동참모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법적 근거	「방위사업법」 제21조 (시험평가)	「방위사업법」 제28조 (품질보증)	제정안
내용	성능 충족 여부 검증 등	요구 조건 부합 여부 확인 등	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 등
기준	시험평가기준	형상식별서 (품질보증규격서)	감항인증기준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라. 함정 전문기관 지정 관련

□ 제정안 제13조제1항9)에서는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10)에 따라 검사

9) 안 제13조(함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함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0) 「선박안전법」 제60조(검사등업무를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감항인증 업무수행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행중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에서는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¹¹⁾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현황(2024년)]

구 분	지정 기관	전문인력 확보 기준
형식인증 ¹²⁾	육군, 공군, 해군, 국과연, 기품원	16명(8개분야 각 2명)
생산확인 ¹³⁾	기품원	5명(5개분야 각 1명)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1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일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것
3.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일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분야
2. 생산확인 분야

12) 시스템 엔지니어링·안전, 구조·재료, 비행기술·무장장착물, 세부계통·추진체, 승무원시스템·승객 안전, 항공전자·컴퓨터자원, 전자기효과·전기계통, 정비·진단계통

13) 조직·설계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제작공정·관리, 공급업체관리, 주요안전품목관리

이와 같이 군용항공기에서의 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고려하면 제정안의 합정 전문기관으로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 한국선급(KR)¹⁴⁾과 프랑스 선급(BV)¹⁵⁾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법인들 또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민간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국제협약 등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급법인(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이 정부를 대행하여 건조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서를 발행하고 있음.

반면, 합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획득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ROC) 및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여 설계·건조되는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합정의 연구개발 품질보증(기본 설계·상세설계·선도함건조), 양산 및 유지 품질보증(양산함건조·운용합정성능개량) 등 전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검사조서를 발급하고 있음.

14) 한국선급(KR) : KOREA REGISTER, 1960년 설립

15) 프랑스 선급(BV) : BUREAU VERITAS, 1828년 설립

함정건조 품질보증 업무흐름도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자료 재구성

□ 함정 감항인증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미국 선급과 공동으로 함정규칙을 개발하여 지원함은 미국 선급에서 함정규칙을 토대로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투함 및 잠수함은 해군에서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음.

영국은 Lloyd 선급의 지원을 받아 영국 함정규칙을 개발하여 함정규칙을 토대로 국방부(함정당국)에서 감항성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GL선급에서 지원하여 독일 함정규칙을 개발해 선급에서 함정규칙을 바탕으로 감항성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프랑스는 BV선급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함정규칙을 개발해 함정규칙을 토대로 선급에서 감항성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¹⁶⁾

[국외 함정 감항인증 관련 수행 주체 현황]

국가	함정규칙 개발	감항인증 수행
미국	해군 & 미국 선급	지원함: 미국 선급 전투함 및 잠수함: 해군
영국	영국 선급	국방부 함정당국
독일	독일 선급	독일 선급
프랑스	프랑스 선급	프랑스 선급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국에서 ‘수출 함정에 대한 인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선급,¹⁷⁾ 영국선급 및 노르웨이선급에서 인증을 수행한 바 있음.

16)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연구개발총괄계약팀

17) 한국선급은 국내외 민간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신뢰성 및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선급기관으로 1960년 설립되어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전세계 80개국의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150여척(8,830만톤)의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01년부터 해군과 함께 ‘함정설계건조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중이며, 2023년부터 국제함정안전협회(INSА)의 정회원으로 INSА/NATO코드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3천톤급 장보고-III 배치1 잠수함 3척에 대한 생존성/안전성 인증 및 잠수함구조합의 주요체계 인증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군이 운용중인 수상함, 잠수함의 안전진단 및 창정비 품질검사, 탑재장비 안전도 검사를 통해 함정의 안전성 확인 활동을 수행중임.

[수출합정 감항인증 현황]

발주국가	계약	합형	물량	인증기관/검사비
인도네시아	2011	잠수함(1차)	3척	한국선급/1.5억 (기자재 인증만 수행)
영국	2012	군수지원함	4척	영국선급/약 56억
노르웨이	2013	군수지원함	1척	영국선급/약 14억
태국	2013	호위함	1척	한국선급/약 9억
필리핀	2016	호위함	2척	영국선급/약 28억
뉴질랜드	2016	군수지원함	1척	영국선급/약 14억
필리핀	2021	초계함	2척	영국선급/약 21억
필리핀	2022	경비함	6척	노르웨이선급/약 30억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한편, 합정 감항인증은 형식승인 및 생산확인 업무수행 시 방산 기술보호, 군사보안, 기술유출 방지조치 등 고려가 필요한 형상 식별서¹⁸⁾(품질보증규격서), 국방규격 등 기술자료에 근거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각 군과 정부출연기관 외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등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합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방위사업청예규) 제3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형상식별서"라 함은 모든 형상관리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체계규격서, 개발규격서, 제품규격서), 도면, 합정건조사양서(BS), 장비 및 설비 사양서, 구매요구사양서, 시운전평가서 등의 기술문서를 말한다.

- 결국 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선진국 사례, 유사 업무의 수행경력, 무기체계 특성에 기반 보안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마. 재정소요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감항인증 업무 수행,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0억 8,900만원, 2030년 75억 9,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9억 2,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¹⁹⁾

19) 이 추계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안 제4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채택·공포한 수상 함 및 잠수함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감항인증 업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수료 수입(안 제9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안 제11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3조)은 유사 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 소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352	120	122	124	126	844
	감항인증 업무	957	938	956	975	994	4,820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3	3	3	3	3	15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	8	8	8	8	8	40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5,814	5,806	6,032	6,267	6,510	30,429
	소 계(A)	7,134	6,875	7,121	7,377	7,641	36,148
재정 수입	수수료 수입(B)	45	45	45	45	45	225
추가재정소요(C=A-B)		7,089	6,830	7,076	7,332	7,596	35,9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용어 정의, 경찰용 선박에 대한 준용(안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함정(艦艇)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함정의 수출을 지원하여 국군장병 및 국민에 대한 안전과 국내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함

나. 잠수함

다. 전투근무지원정

2. “감항성(堪航性)”이란 함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운항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함정이 감항성을 갖추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함정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함정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함정을 구매하는 사업

다. 함정을 개조·개량하는 사업

라. 함정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함정에 장착하는 사업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함정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함정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함정 사업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경찰용 선박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함정”은 “경찰용 선박”으로 본다.

□ 안 제1조에서는 감항인증의 목적이 합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대해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이 조항들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 및 구조임.²⁰⁾

-
- 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 마. 삭제 <2012. 12. 18.>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 안 제2조제5호는 사업관리기관을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함정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함정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함정 사업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재위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고려하는 경우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²¹⁾

또한, 안 제3조 경찰용 선박 준용과 관련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경찰용 선박은 그 목적과 규율내용이 군함정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감항인증 절차 및 적용 제외 등 (안 제4조~제7조)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함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함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함정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

21) 구체적으로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함정 관련 업체’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함형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함정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함정 사업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함정 설계가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한 항해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함정이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주요안전품목 관리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형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 또는 제6항에 따른 감항인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인증 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경우

2. 함정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조(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함정에 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함정이 운항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 제한사항 및 운항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정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5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출용 함정에 대하여 해당 함정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

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함정으로서 그 함정을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함정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함정에 장착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5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함정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 안 제4조와 제7조는 표준감항인증기준 제정 및 고시와 관련된 사항과 기준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²⁾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

22) 안 제4조와 제7조는 각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하고 국제적 공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외 조항의 제정으로 업무중복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이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해당 기준을 기초로 사업별·함형별 감항인증기준 역시 마련할 수 있으므로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준비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는 감항인증 신청부터 감항인증서 발급까지의 업무 절차 및 해당 업무별 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³⁾

23)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각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4항은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함정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규정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을 의미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고려할 때,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감항성 유지·기술지원 및 수수료(안 제8조, 안 제9조)

제8조(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함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함정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함정 운용기관의 장이 운용 단계에서 감항성 유지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는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²⁴⁾

24) 안 제8조와 제9조는 각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6조(수수료)와 유사한 내용 및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안 제10조, 제11조)

제10조(합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합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합정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정 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안 제10조는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및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²⁵⁾

□ 그런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²⁶⁾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차장)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²⁷⁾에 따라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해 자문

25)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 12. 18.>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4. 23.>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두고
있음. 항공기와 함정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이 동일하며, 실무위원회 설치 및 자문위원 선정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마. 기술자료 지원·유지, 예산 지원, 업무 지원 요청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제12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의 운항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의 장 또는 군용함정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
증을 받은 함정의 운항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정 또는 그 부
품·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
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2조는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항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6조는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²⁸⁾

28)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유지),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3조(업무 지원 요청)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안 제13조, 제14조)

제13조(합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합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4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합정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함정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함정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함정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4. 감항인증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는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안 제14조는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⁹⁾

29)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관련 전문기관-주

□ 안 제13조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앞서본 바와 같이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선진국 사례, 유사 업무의 수행 경력, 무기체계 특성에 기한 보안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제3항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관기관 운영방식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감항인증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확인 기간이 추상적이고 불특정하므로, 확인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4조제2항제1호는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업무를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감항인증 업무 체계 및 절차를 보면 감항성 심사를 제외한 표준감항인증 기준의 고시, 감항인증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감항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관기관이 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에 따라 안 제5조에 명시된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감항인증 업무 주관’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7조)

제17조(위임·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함정 및 그 부품·구성품을 제작·개조·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7조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각 군 및 전문기관이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함정 및 그 부품·구성품을 제작·개조·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³⁰⁾

□ 그런데,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³¹⁾ 권한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위임되는 것이고, 행정기관과 민간 사이에서는 사무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업무’ 또는 ‘사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이후 착수하는 함정 사업부터 적용한다.

30) 안 제17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와 유사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구성품을 제작·개조·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31)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합정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함형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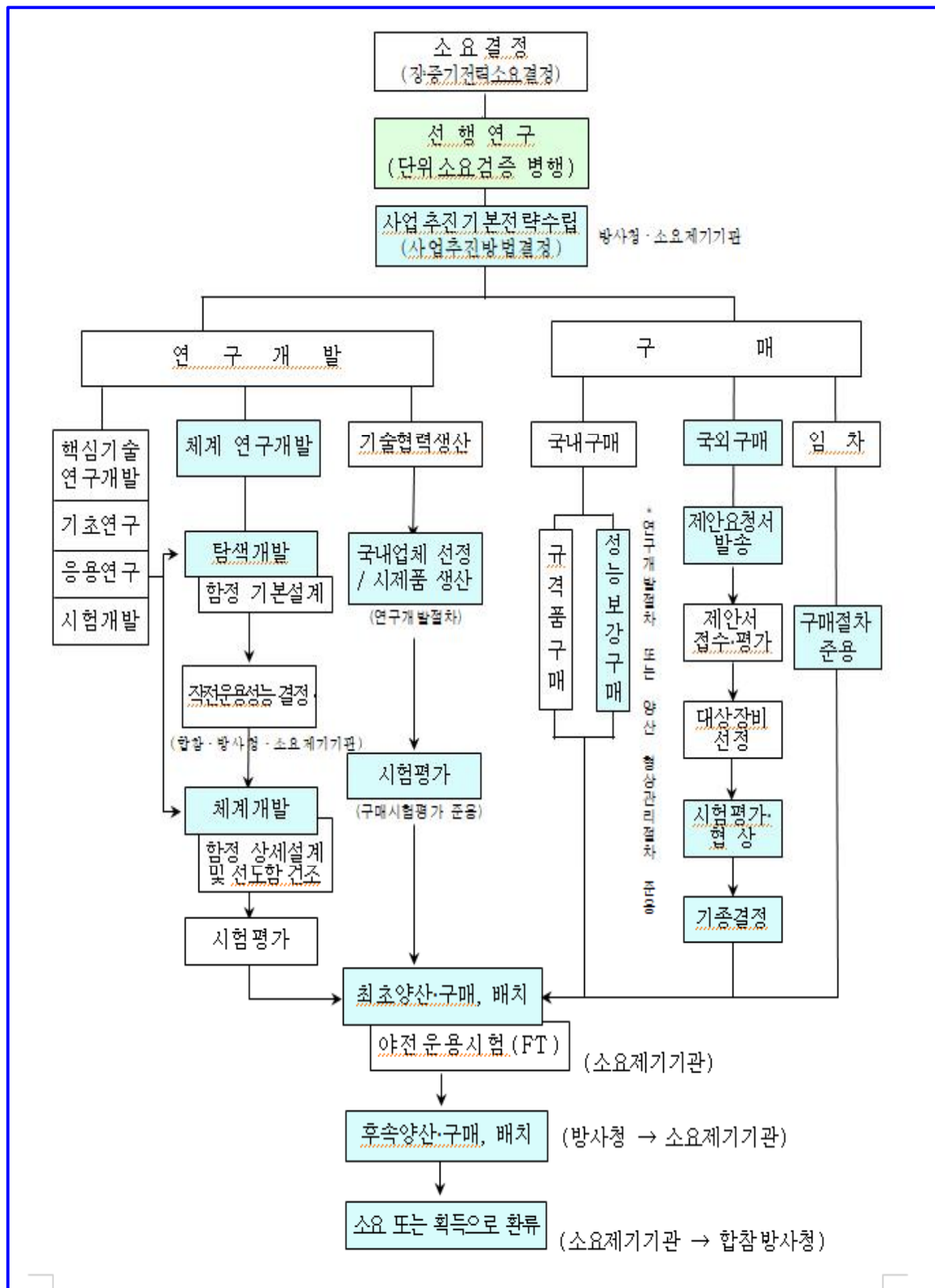
제3조(감항인증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관련하여, 감항인증 전문기관 인력 및 예산 확보와 표준감항인증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착수’의 개념이 일련의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어느 단계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 시 사업 추진방향과 사업예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도]



*자료: 방위사업청

※ 참고자료

1. 해군 함정 종류 및 분류

함정 종류	임 무	함명 제정기준 및 해군 주요함정
구축함 (Destroyer)	대잠전, 대함전 및 대공전 능력을 강화한 해상기동부대의 주력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인물 * KDX-I :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 KDX-II : 충무공이순신, 왕건, 최영, 강감찬, 대조영 등 * KDX-III Batch-I : 세종대왕, 울곡이이, 서애류성룡 * KDX-III Batch-II, KDDX : 방사청 사업 중
호위함 (Frigate)	평시 해상경비 · 초계 임무수행,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수행 등	道, 특별 · 광역시, 도청소재지 名 * FFG : 인천, 서울, 대구, 동해, 강원, 춘천함 등 (울산급 Batch-I/II/III 건조 및 사업 중)
초계함 (Corvette)	함대사의 주요전력	市 단위급 중 · 소도시 지역 名 * PCC : 천안('10. 3.26 적 어뢰에 의해 침몰), 속초, 충주, 진주, 여수, 공주, 남원 등
고속함(정) (Patrol ship)	적 해상침투 시 현장 대응하는 함대사의 전초전력	해군창설 이후 전투/해전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귀감이 된 인물(제2연평해전 영웅 포함) * PKG : 윤영하, 현시학, 정금모, 임병래, 김수현함 등 * PKX-B Batch-I/II : 방사청 사업 중
상륙함 (Amphibious ship)	상륙전력을 수송하는 임무와 해외 파병, 재난구조 지원	영해수호 의지를 담아 최외곽 도서 名, 상륙 후 고지탈환의 의미를 내포한 산봉우리 * LST : 비로봉, 성인봉, 천왕봉, 향로봉함 등 * LPH : 독도함, 마라도함
기뢰전함 (Mine warfare ship)	적 항만 봉쇄 및 우리 항만 보호를 위해 기뢰 부설 및 적이 부설한 기뢰를 탐색 · 소해	6 · 25전쟁시 기뢰전을 수행한 북한 지역 名 또는 해군기지에 인접한 군 · 읍 지역 名 * MLS : 원산함, 남포함 * MHC : 강경, 강진, 고령, 김포, 고창, 금화함 * MSH : 양양, 해남, 웅진, 고성함
구조함 (Salvage & Rescue ship)	해상 사고발생시 함정과 인원을 구조	해양력 관련 역사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 名과 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업도시 名 * ATS(수상함구조함) : 통영, 광양함 * ASR(잠수함구조함) : 청해진함, 강화도함
군수지원함 (Auxiliary ship)	해상에서 전투함정에 군수보급 지원	함 특성(유류/청수 적재) 고려 담수량이 큰 호수 名 * AOE : 천지, 대청, 화천, 소양
잠수함 (Submarine)	수중 은밀성을 장점으로 대함, 대잠전 및 핵심표적 타격임무 수행, 국가 전략무기	국난 극복 공로 인물, 항일독립운동 공헌 또는 광복후 국가발전 기여로 존경받는 인물 * SS-I(209급) : 장보고, 최무선, 이종무, 나대용, 정운 등 * SS-II(214급) : 손원일, 정지, 안종근, 김좌진함 등 * 장보고-III Batch-I : 도산안창호, 안무함 등 * 장보고-III Batch-II : 방사청 사업 중

* DDH : Destroyer Helicopter(헬기탑재구축함), DDG : Guided Missile Destroyer(유도탄구축함)
 * FFG : Guided Missile Frigate(유도탄호위함), FF : Frigate(호위함)
 * PCC : Patrol Combat corvette(초계함), PKG : Guided Missile Patrol Boat Killer(유도탄고속함)
 * PKMR : Patrol Killer Medium Rocket(고속정)
 * LPH : Landing Platform Helicopter(대형수송함), LST : Landing Ship Tank(상륙함)
 * MLS : Mine Laying Ship(기뢰부설함), MSH : Mine Sweeping Hunting(소해함)

- * MHC : Mine Hunting Coastal(기뢰탐색함), ATS : Auxiliary Tug Salvage(수상함구조함)
- * ASR : Auxiliary Submarine Rescue(잠수함구조함), AOE : Auxiliary Oil Ammunition(군수지원함)

구분	함정의 분류
운용환경	수상함 / 수중함(잠수함)
운용목적	전투함 / 전투지원함 / 전투근무지원정

- * 전투함 :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 기뢰전함 등
- * 전투지원함 : 군수지원함, 구조함, 정보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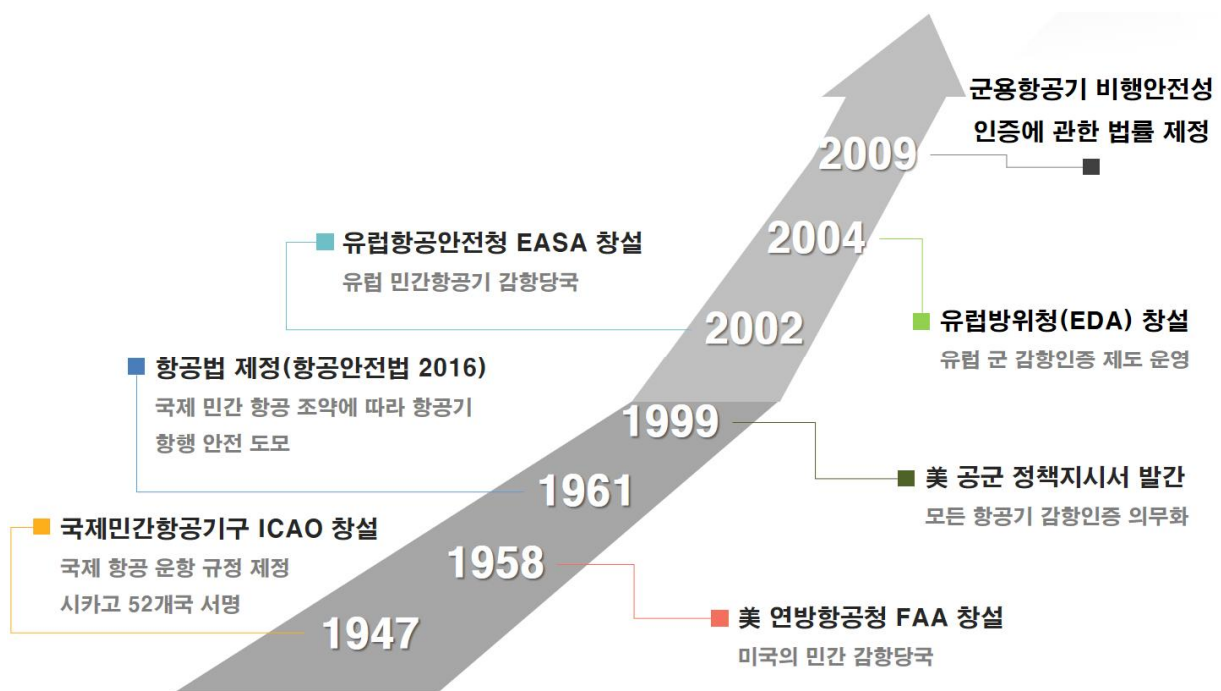
출처: 방위사업청

2.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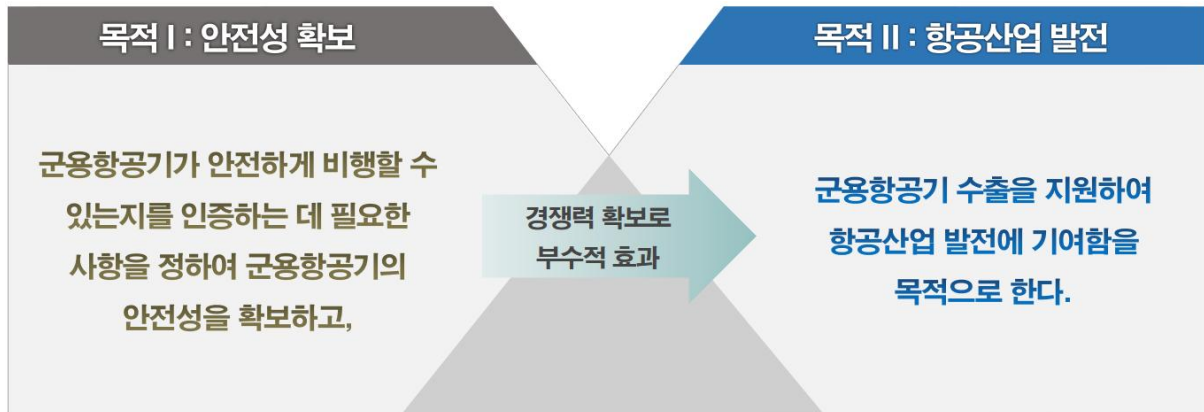
□ 감항인증 정의

- 감항성(堪航性):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
- 감항인증(堪航認證):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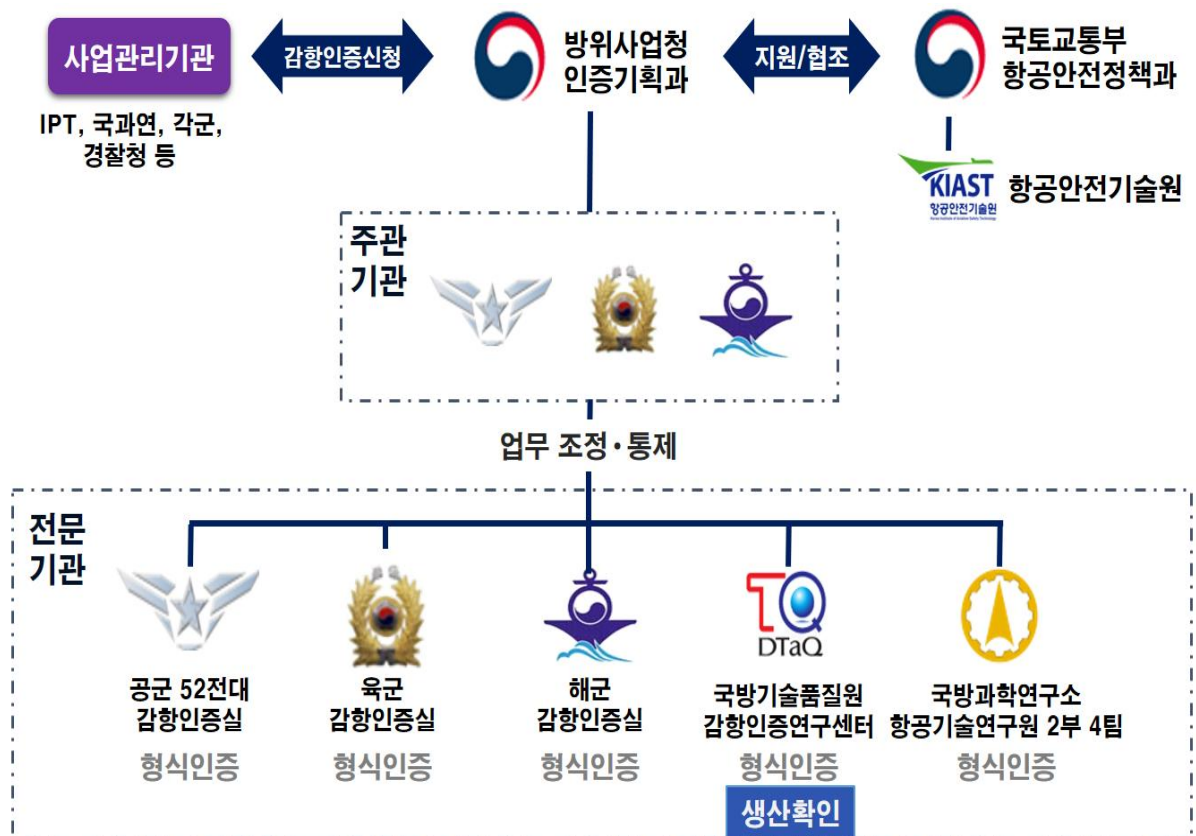
□ 감항인증의 역사



□ 감항인증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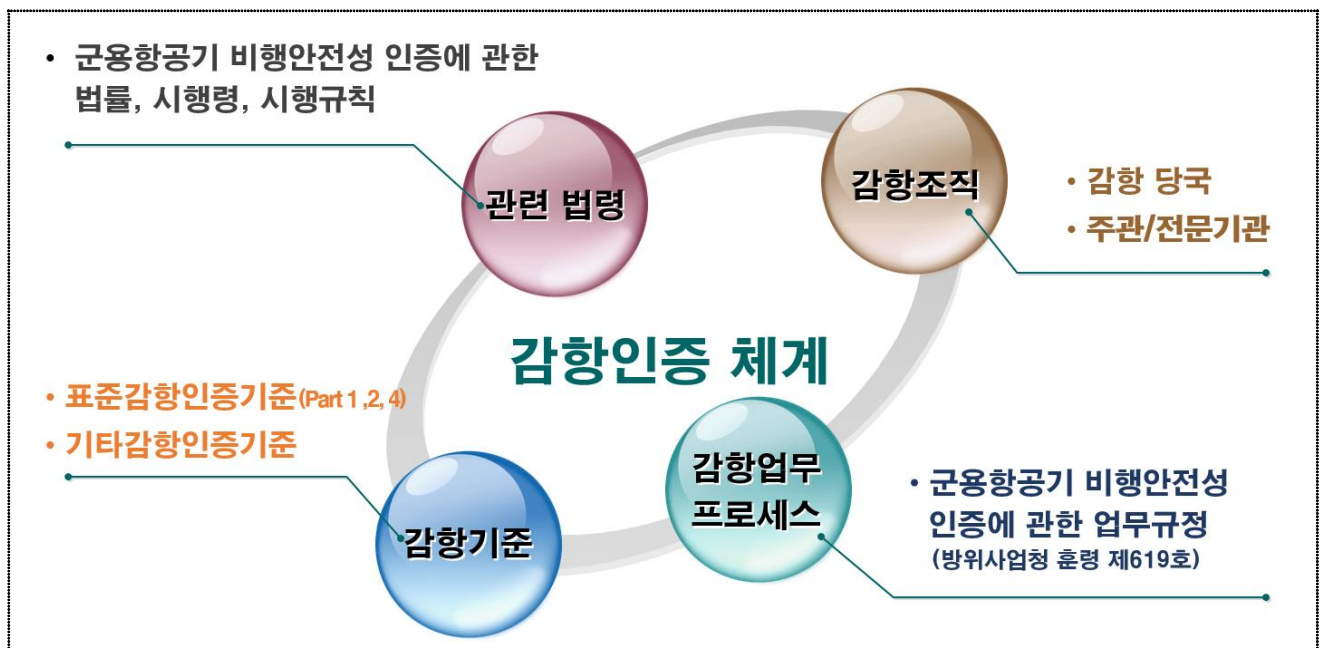
□ 감항인증 조직



□ 국방기술품질원 감항인증연구센터 임무 및 주요 업무

임무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주요 업무	제도기법 연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조사 및 분석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제도, 기술, 기준 등 연구
	감항인증 수행	군용 항공기 설계 적합성 검증 / 생산확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감항인증 기술변경 및 부품국산화 품목 감항영향성 검토
	대외협력	국방품질연구회 감항인증분과 활동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감항인증세션 운영 감항인증 유관부서 교류 · 협력

□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



□ 감항성 심사 절차



* IPT : 통합사업관리팀(사업관리기관)

□ 감항업무 프로세스

개발단계	생산단계	운영 단계
형식인증 (Type Certification)	생산확인 (Production Validation & Audit)	감항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 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

□ 감항인증기준

○ 표준감항인증기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기준)

구분	적용 대상	적용 사업	비고 (인용문서)
Part 1	유인/무인 •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KF-X	미군 MIL-HDBK-516C
Part 2	고정익 무인기 (150kg~20,000kg)	사단, 군단, 중고도	NATO STANAG-4671
Part 3	경량 고정익 무인기 (150kg 이하)	-	NATO STANAG-4703 (폐지)
Part 4	소형 무인기 (600kg 이하)	-	미 공군 AC-20-02

○ 기타감항인증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적용 사업	적용 기준	비 고
수리온	미 연방항공청 규정 Part 29	Airworthiness Standards : Transport Category Rotorcraft
KT-1 수출기 (페루, 터키)	미 연방항공청 규정 Part 23	Airworthiness Standards : Normal Category Airplanes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 자료 재구성